

2000년도
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泗川市議會
(産業建設委員會)

목 차

1. 감사의 목적	2
2. 감사기간	2
3. 감사실시대상기관	2
4. 감사반 편성	3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	4
6. 주요 감사사항	5
7. 감사요령	7
8. 감사 자료제출	9
9. 관계공무원 출석(요구)	9
10. 기타사항	10

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

1. 목 적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~ 제19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,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감사기간 : 2000. 6. 16(금) ~ 6. 22(목)<7일간>

3. 감사실시대상기관

위원회 선정대상기관	본회의 승인 대상기관
☐ 해양수산실 ☐ 지역개발국 ☐ 보건소 ☐ 농업기술센터 ☐ 읍·면·동	☐ 해양수산실 ☐ 지역개발국 ☐ 보건소 ☐ 농업기술센터 ☐ 읍·면·동

4. 감사반 편성

가. 방침

-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
- 사무보조는 전문위원,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.

나. 감사반 편성

대 상 기 관	감사위원장	감 사 위 원	사 무 보 조
○ 해양수산실	이 인 효	최 동 식	소재성 전문위원
○ 지역개발국		김 민 조	박정수 직원
○ 보건소		김 종 찬	김영운 직원
○ 농업기술센터		차 병 탁	임수정 속기사
○ 읍·면·동		정 순 갑	

5. 감사일정 및 장소

감사일시	장소	대상기관	비고
6. 16(금)	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	○ 해양수산실	
6. 17(토)	"	○ 지역경제과 ○ 건설과	
6. 18(일)			공휴일
6. 19(월)	"	○ 도시과 ○ 교통관광과 ○ 지적과 ○ 상하수도과 ○ 녹지과	
6. 20(화)	"	○ 보건소 ○ 농업기술센터	
6. 21(수)	소회의실	○ 읍면동(14개)	
6. 22(목)	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	보고서 작성 및 현지확인	

※ 필요시 현지확인

6. 주요 감사사항

대상 기관	주요 감사 사항	비고
해양수산실	○ 각종 사업 추진현황 ○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태 ○ 어항수축사업 ○ 수산 증·양식사업 ○ 해양오염 실태 ○ 간이소각로 운영실태 ○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사항	
지역경제과	○ 지역물가안정대책 ○ 시장현대화사업 ○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○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자금 지원현황 ○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○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유치 촉진사업 관련 ○ 기능대학 건립	
건설과	○ 공사 추진 현황 ○ 도서 낙도 종합개발사업 ○ 재해위험지 ○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○ 사천대교 건설 관련 ○ 문화마을 조성사업	
도시과	○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관련 ○ 토질형질변경 ○ APT공사 관련 ○ 건축관련 민원 ○ 사천읍 선인지구 구획정리사업 ○ 오지개발사업	

대상 기관	주요 감사 사항	비고
교통관광과	○ 자동차 등록현황 ○ 도심 교통난 해소대책 ○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항 ○ 관광이벤트 개발 관련 ○ 유람선형 거북선 건조 추진사항 ○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 보수 ○ 연육교 주변 관광개발계획	
지 적 과	○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 ○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련 ○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현황 ○ 건축물대장 지번 정비사업	
상하수도과	○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○ 누수방지 종합대책 ○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○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 ○ 하수관거 정비사업 ○ 농·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발사업	
녹 지 과	○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관련 ○ 도시공원 조성 종합개발 계획 ○ 임도개설사업 ○ 산림 형질 변경 ○ 산림부분 투자사업 ○ 공원부지 매입 관련	
보 건 소	○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○ 의약품 구입 관련 ○ 노인보건사업 추진상황 ○ 이동건강검진사업 ○ 공중위생업소 관리 ○ 방역약품 및 급·만성 전염병 예방사업	

대상 기관	주요 감사 사항	비고
농업기술센터	○ 농지전용 허가 ○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○ 정부양곡 보관 관리 ○ 보상금 집행 관련 ○ 농민교육관 건립 관련 ○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 ○ 과학영농 새기술시설 운영현황 ○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○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○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○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○ 가축방역사업	
읍면동	○ 기본현황 ○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○ 집단민원 현황	

7. 감사요령

가. 감사방법

-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, 자료제출 요구, 정책 질의,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
-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.

나. 감사요구사항

-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, 증인출석,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함.

다. 감사의 공개원칙

-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본회의,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라. 감사의 진행순서

- 감사개시 선언(위원장)
- 위원장 인사 : 감사의 지침,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사명감, 수감기관의 수감태도 등
- 증인 선서
- 업무현황 보고 청취
 - 인사 및 간부소개
 - 업무현황 보고
- 정책 질의 및 답변(현장확인, 증언 청취)
- 감사결과 총평 : 감사종료 인사(위원장)
- 감사종료 선언(위원장)

마. 선서요령

-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,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함.
-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,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.

8. 감사자료 제출

가. 2000년도 업무 추진사항

- ☐ 기본현황
- ☐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
- ☐ 예산집행 사항
- ☐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
- ☐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등

나. 위원회(감사위원)에서 요구하는 자료(별도제출)

관 련 부 서	자 료 내 용	비 고

9. 관계공무원 출석요구

가. 출석대상

- ☐ 부시장
- ☐ 해양수산실장
- ☐ 지역개발국장, 지역경제과장, 건설과장, 도시과장, 교통관광과장, 지적과장, 상하수도과장, 녹지과장
- ☐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보건소관리과장, 보건진료센터소장, 농정과장, 농업진흥과장, 기술지원과장

- 사천읍장, 정동면장, 사남면장, 용현면장, 축동면장, 곤양면장, 곤명면장, 서포면장, 동서동장, 선구동장, 동서금동장, 벌용동장, 향촌동장, 남양동장

나. 출석일시 : 감사일정 참조(4쪽)

10. 기타사항

가. 감사의 한계(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)

-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됨.

나. 주의의무(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)

-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.
-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됨.

다. 감사결과의 보고(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)

-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.

라.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(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)

-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
- 감사결과시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.
-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마. 감사결과 보고서 기재내용

-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
- 기재내용 : 감사의 목적, 감사기간, 감사실시 대상기관, 감사실시 경과, 주요 감사 실시내용,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, 중요 근거서류, 기타 특이사항 등.